

서 면 답 변 서

질의 의원명	김 인	소속위원회	총무사회 위원회
심사 안건명	'97. 행정사무감사		
질의 주내용	'91년 사업소세 소멸시효분에 대한 독촉 근거는?		

답 변 내 용

- 지방세의 독촉은 지방세법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기한이 경과한 후 은행납의 경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 독촉은 1회에(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함) 한한 독촉기간만이 시효의 중단 기간이며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91년 소멸시효분 사업소세의 결손은 소멸시효의 완성시기인 '97년 2월 현재 결손처분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였다고 사료되며, '91년 사업소세의 독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1년 소멸시효 사업소세 독촉 사항

세목 연도	납기	독 촉 장 발송일자	시효중단 기 간	새로 진행되는 시기	시효가 완성시기	소멸시효	비고
사업소세 '91	7/31	'91.8.21	'91.8.1 ~ '91.8.31	'91. 9.1.	'96. 9.1.	2건	
사업소세 '91	8/31	'91.9.21	'91.9.1 ~ '91.9.30	'91.10.1.	'96.10.1.	5건	
사업소세 '91	12/31	'92.1.21	'92.1.1 ~ '92.1.31	'92. 2.1.	'97. 2.1.	1건	